



【검토보고서】

2019. 6. 3.(월)
제306회 정례회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헌】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안전건설과장)
- 제출일 : 2019년 5월 27일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임무(안 제4~5조)
- 다.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안 제7조)
- 라.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및 운영(안 제9~10조)
- 마. 교육 및 훈련(안 제13~14조)
- 바. 재해보상(안 제18조)

4. 기타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나. 입법예고 : 2019. 4. 3. ~ 4. 22. (20일간)
- 다. 부서협의
 - 1) 협의기간 : 2019. 3. 19. ~ 4. 1. (14일간)
 - 2)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요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전반적인 조례체계를 재구성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설치(안 제1조 ~ 안 제3조)

현행	전부개정안
<u>양주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u>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주시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5조에 따라 ----- 지역자율방재단의 -----.</p>
<p><u>제2조(명칭)</u> 명칭은 “양주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p>	<p><u>제2조(명칭)</u> 명칭은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p>
<p><u>제3조(설치)</u> (생략).</p>	<p><u>제3조(설치)</u> (현행과 같음)</p>

- “양주시 자율방재단” →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명칭 변경

2)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구성 및 임무 등(안 제4조 ~ 안 제6조)

현행	전부개정안
<p><u>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u></p> <p><u>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방재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u></p> <p><u>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u></p> <p><u>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u></p> <p><u>⑥ 방재단의 가입 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u></p>	<p><u>제4조(조직) ① -----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 된다.</u></p> <p><u>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u></p> <p><u>③ 부단장·간사는 -----</u></p> <p><u>-----.</u></p> <p><u>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u></p> <p><u>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u></p> <p><u>⑥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u></p>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 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⑧ 읍·면·동 방재단원은 양주시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신 설>

⑦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읍·면·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삭 제>

<삭 제>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총괄하며, -----.

②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
-----.

③ ----- 보좌하며, -----
-----.

④ ----- 담당하며, -----
-----.

⑤ 읍·면·동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 읍·면·동 대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임원----- 나머지 -----.

제6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

<p>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u>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양주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4. (생략) 5. <u>기타</u>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p><u>행이 불가능 할 경우</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u>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u> 3. <u>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u> 4. <u>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u> <p>② <u>단장은 다음 각 호의 ----- 협의회를 통해 ----- 해임할-----.</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분명하지 아니</u>----- 2. ----- <u>이외의</u> ----- 3.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	--

○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자격

-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양주시장이 임명함
-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
-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음
-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함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3)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안 제7조)

현행	전부개정안
<p>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양주시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u>협의회</u>"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위원 <u>3분의2 이상</u>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u>심의·조정된</u>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 --- <u>검토·조정</u> ----- <u>심의·조정</u>----- ----- ----- "<u>협의회</u>"라 한다)를 구성한다.</p> <p>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p> <p>③ ----- <u>단원 3분의 2이상</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지원 대책</u>----- ----- -----.</p> <p>⑥ ----- <u>심의·조정된</u> ----- ----- -----.</p>

○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 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원은 20명 이내)
-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음

○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역할

-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 및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
-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

4)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소집, 운영 등(안 제8조 ~ 안 제10조)

현행	전부개정안
<p>제8조(임무) ① (생략)</p> <p>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p> <p>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생략)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등 <p>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p>	<p>제8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 다음 각 호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인적·물적 ----- ----- 2. ----- 신고·정비 3. -- 예방·대비 ----- ----- 4. ---- 교육·훈련프로그램 ----- 교육· 훈련실시 5. ----- -----차량 통제 -- 6. (현행과 같음) 7. ----- 상·하수도 ----- ----- 8. 감염병 ----- 9. ----- 수요파악 10. ----- -----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 <p>③ -----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 ----- -----.</p>

⑤ (생략)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양주시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
----- 등-----
-----.

③ -----
----- 행정적·재정적 -----
-----.

제10조(운영 등) ① ----- 활동
완료-----
-----.

② -----
----- 1회 이상 -----
----- "단원활동현황 총괄표"-----
-----.

③ ----- 행정적·재
정적 -----.

④ ----- 비상단계시 양주시
재난안전상황실-----
----- 단
만, -----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
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양주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

⑤ 합동 -----
----- 1명-----
-----.

⑥ -----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
-----.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⑧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자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및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조직에 가입되어 동일목적으로 타 조직을 통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⑨ 시장은 방재활동 중 예상되는 사망·질병·부상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제7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

-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

○ 지역자율방재단 재정적 지원의 범위

-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단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 ④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5) 금지행위 및 출입증 발급 (안 제11조 ~ 안 제12조)

현행	전부개정안
<p>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u>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1. ~ 3. (생략)</p> <p>4. <u>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u></p> <p>제12조(출입증 발급) ① (생략)</p> <p>② <u>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u></p>	<p>제11조(금지행위) ----- ----- <u>다음 각 호</u>----- ----- <u>아니 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 -----</u></p> <p>제12조(출입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u> -----.</p>

6)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안 제13조 ~ 안 제14조)

현행	전부개정안
<p>제13조(교육) ① <u>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 할 경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방재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u></p> <p>② <u>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③ <u>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p> <p>④ <u>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u></p>	<p>제13조(교육) ① ----- ----- <u>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u> -- <u>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 ----- <u>단장과</u> <u>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같음할 수 있다.</u></p> <p><삭 제></p> <p><삭 제></p> <p>② ----- -----.</p> <p><u>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u></p>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 할 수 있으며,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7) 중앙지원단 자문 및 감독, 시행규칙 (안 제15조 ~ 안 제17조)

현행	전부개정안
<p>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u>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u>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u><신 설></u></p>	<p>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 <u>방재단의 조직·운영</u> ----- -----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분기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을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단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p> <p>제17조(시행규칙)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16조(감독) ① -----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 -----.</p> <p>② ----- 지도·감독을 하여야 ----- -----.</p> <p>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 ----- -----.</p>
--	--

8) 재해보상 (안 제18조)

현행	전부개정안
<p><신 설></p>	<p>제18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p>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p>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재해보상의 종류

-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 종합의견

- 본 전부 개정조례안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전반적인 조례체계를 재구성 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조례 개정을 통하여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개인,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로 시민 생활공간에 근접하여 다양한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예찰과 봉사활동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방재활동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